

[붙임]

※ 수험생은 본 종합안내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시험에 임해야하며
종합안내서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입니다.

종합안내서

목 차

1. 2019년도 제5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원서접수	1
<서식1> 응시원서	3
<서식2> 이력서	5
<서식3> 자기소개서	6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7
2.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안내 (장애인·저소득층)	8
3.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 안내	11
[참고1]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제출서류	14
[참고2]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 시 유의 사항	15
<서식5> 장애인 등 편의 지원 신청서	16
4.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17
5. 가산점 관련 안내	19
[참고1] 직류별 적용 가산점 자격증 일람표	24
6. 수험생 유의사항	26

※ 서식은 [별첨] 각종 서식모음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5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원서접수**

1. 2019년도 제5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원서접수

□ 응시원서접수 개요

- 대 상 : 수의7급 응시자
- 접 수 기 간 : 11.4. ~ 11.6. (09:00~18:00) ※ 점심시간은 제외(12:00~13:00)
- 응시수수료 : 7,000원 (7급)
※ 제5회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수수료는 전라북도수입증지(도청 1층 민원실에서 판매)를 구입하여 영수증과 서류를 함께 제출
- 응시원서 제출방법 : 방문접수 ※ 우편(등기)접수 불가
- 제 출 처 :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2층
총무과 공무원채용팀 사무실 (※민원실 2층)

□ 응시자 제출서류

- ① 응시원서(붙임 <서식1>, 자필기재) 1부.
 - 응시원서에는 임용예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중복접수 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해당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 ② 이력서(붙임 <서식 2>, 워드작성 및 자필서명 또는 인) 1부.
- ③ 자기소개서(붙임 <서식 3>, 워드작성 및 자필서명 또는 인) 1부.
-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붙임 <서식 4>, 워드작성 및 자필서명 또는 인) 1부.
- ⑤ 자격 면허증 사본 1부. (※원본지참 필수)

<서식 1>

응 시 원 서

본인은 2019년도 제5회 전라북도 지방공무원(수의직)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9 년 월 일

전라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응시번호	응시번호는 기재하지 않음		성명	(한글)	
응시직급				(한자)	
임용예정 기 관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				
전화(휴대전화)					
최종학력	학교명	전공	학위종류	학위번호	학위취득일
자격·면허	자격·면허증명	등록번호	취득(예정)일	시행기관	



응 시 표 2019년도 제5회 전라북도 지방공무원(수의직) 경력경쟁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임용예정 기 관			
성명	(한글)	(한자)	
2019 년 월 일 전라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시 : 수의7급)
3. 임용예정기관 : 응시하고자 하는 기관을 기재함 (예시 : 전라북도, 전주시 등)
4.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5.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6. 전라북도수입증지 : 도청 1층 민원실에서 아래 해당 금액의 증지를 구입하여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뒷면에 붙임
- 7급 · 연구사 : 7,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7. 본인의 자필로 작성함

<서식 2>

이 력 서

인적사항

임용예정기관	전라북도, 전주시	응시직급	수의7급
성 명		생년월일	(만 세)
현 주 소			
현 소 속	기관 및 부서 :	직위 :	
연 락 처		E-mail	

학력사항

	학위종류	전 공	학위번호	학위취득(예정)일
학력 및 전공	학사 이상 기재			00년 00월
	학교명은 기재하지 않음			
논문, 저술, 償 등				

관련 면허·자격증

면허·자격증명	등록번호	취득(예정)일	시행기관

위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제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3>

자 기 소 개 서

응시직렬(직류)	임용예정기관	성 명	연락처
수의7급	전라북도, 전주시		

지원동기

성장과정 및 성격(장·단점)

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인생관

기타사항

2019년 월 일

작성 자 : (서명 또는 인)

※ 분량은 휴먼명조 12포인트로 A4용지 2매 이상 작성

※ 자기소개서 작성시 주의사항

- 자기소개서에는 본인에 관한 사항만 작성하는 것으로 본인 이외의 부모 및 친인척의 신상에 관한 내용(성명, 직장명, 직위, 근무처 등)을 기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자기소개서 작성 시 본 주의사항은 삭제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전라북도인사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메일, 전화번호, 학력·경력사항, 자격·면허 소지사항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신원조사·신원조회 포함)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에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권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input type="checkbox"/>
2019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II.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①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자격번호 등

나) 수집 및 이용목적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신원조사·신원조회 포함)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에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권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input type="checkbox"/>
2019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2.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안내 (장애인 · 저소득층)

2.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안내 [장애인 · 저소득층]

- ①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행정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필기합격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에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 가능 합니다.(단, 중복접수는 불가능함)
 - **장애인 응시자 중 편의지원을 원하는 수험생은 11p 장애인 등 편의지원제공 안내문을 참고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신청 또는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아름다운 山河 응비하는 생명의 삶터, 천년전북!

-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신청 또는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연속성을 인정함)
-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에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가능 합니다.(단, 중복접수는 불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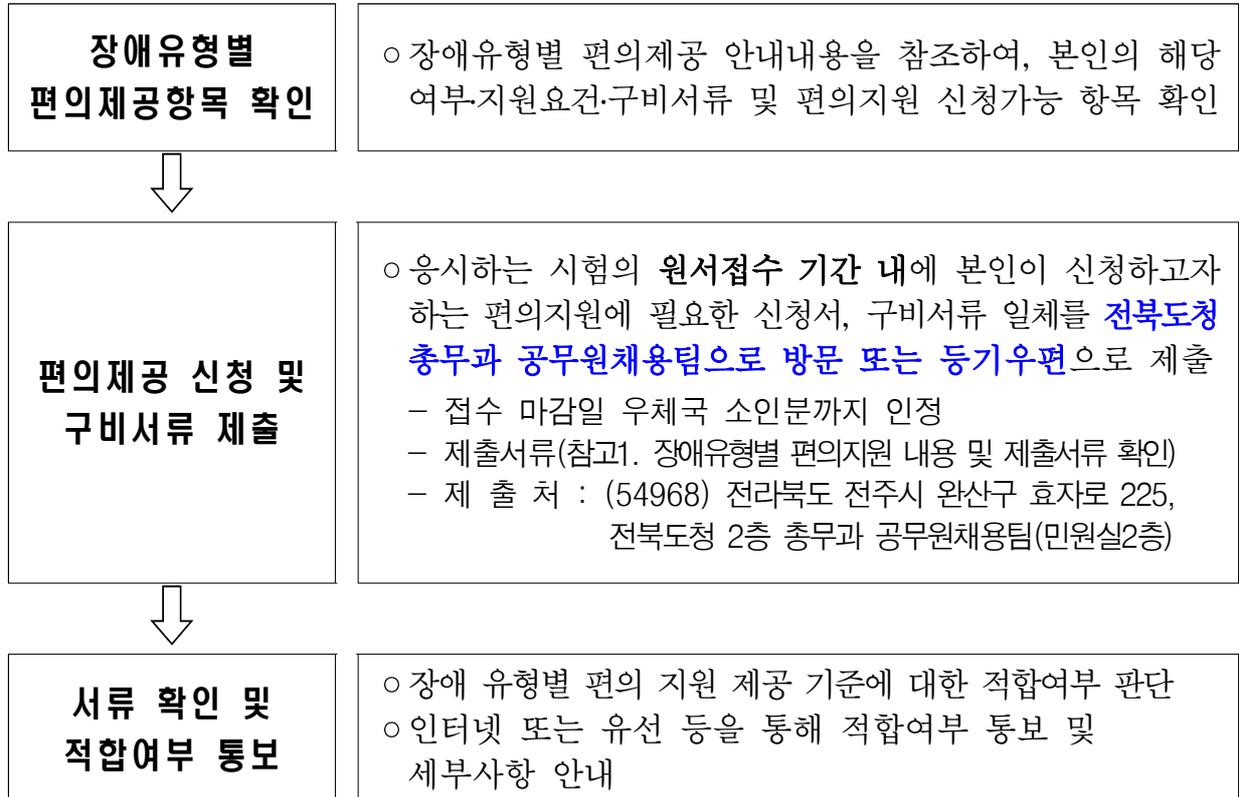
3.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 안내

3.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 안내

□ 편의지원 제공 대상

- 2019년도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사람 중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한 상이 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사람으로서
 - 시각·지체·뇌병변·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 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
- 기타 특수·중복장애, 임신부 등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

□ 편의지원 신청절차



□ 편의지원 제공 신청 시 유의사항

- 장애 유형별 편의 지원 내용(참고1)을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여부, 구비서류 및 편의지원 신청가능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되는지 참조한 후 14p[참고1] 장애 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단서 및 소견서에 해당 장애유형과 등급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비장애인 모집 단위에서는 시험시간 연장 신청이 불가합니다.
- 의사소견서 및 의사진단서에는 장애로 인한 해당 편의제공 내용의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으로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 받은 원본만 인정)
 - ※ 해당지역의 종합병원(또는 상급병원) 해당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 [자주찾는 민원서비스] → [병원 및 검증기관 찾기]을 차례로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병원 확인 후 발급)
- 2019년도 이후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편의 지원을 받은 응시생은 동일한 편의지원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면제합니다. (단, 신청서는 제출해야 함)
 - ※ 제출했던 서류의 발급일이 당해 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인 경우만 인정
- 장애 유형별 편의지원 제공 기준에 대한 적합여부 판단 등 시험진행 사정상 편의지원 내용 일부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험 진행 일정상 별도의 보완 기간이 없으므로 의문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전북도청 총무과 공무원채용팀(063-280-2266, 2213, 421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제출서류**

장애유형 및 등급		편의지원 내용	제출(증빙)서류
지체장애	상지 장애정도가 심한 자 (舊.1급~3급)	시험시간 1.5배 연장, 대필, 확대문제지 제공, 확대답안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	◦ 장애인증명서
	상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舊.4급~6급)	확대문제지 제공, 확대답안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	◦ 장애인증명서
	하지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심하지 않은 자 (舊.1급~6급)	별도시험실 배정, 휠체어 전용 책상	◦ 장애인증명서
뇌병변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자 (舊.1급~3급)	시험시간 1.5배 연장, 대필, 확대문제지 제공, 확대답안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 휠체어 전용 책상	◦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舊.4급~6급)	시험시간 1.5배 연장	◦ 장애인증명서 ◦ 의사진단서(원본)
		대필	◦ 장애인증명서 ◦ 의사소견서(원본)
		확대문제지 제공, 확대답안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 휠체어 전용 책상	◦ 장애인증명서
시각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자 (舊.1급~2급)	시험시간 1.7배 연장, 음성지원컴퓨터 제공, 점자문제지 제공, 확대(축소)문제지 제공, 확대답안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가 심한자 (舊.3급2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舊.4급2호) (시야 10도 이하)	시험시간 1.7배 연장	◦ 장애인증명서 ◦ 의사진단서(원본)
		음성지원컴퓨터 제공, 점자문제지 제공	◦ 장애인증명서 ◦ 의사진단서(원본)
		시험시간 1.5배 연장, 확대(축소)문제지 제공, 확대답안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가 심한자 (舊.3급2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舊.4급, 5급1호)	시험시간 1.5배 연장, 확대(축소)문제지 제공, 확대답안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舊.3급)중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	시험시간 1.5배 연장	◦ 장애인증명서 ◦ 의사진단서(원본)
확대(축소)문제지 제공, 확대답안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舊.5급2호, 6급)	확대(축소)문제지 제공, 확대답안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장애인증명서	
청각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심하지 않은 자 (舊.2급~6급)	응시요령 등 인쇄물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수화통역사 배치	◦ 장애인증명서
기타	특수 및 중복지장애 일시적 신체장애	장애정도를 검토하여 결정	◦ 의사소견서(원본)
	임신부	높낮이 조절 책상,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	◦ 의사소견서(원본)

- ※ 확대문제지 : A3 규격의 118%(14point), 150%(18point)로 확대된 2종류 중 택 1
- ※ 축소문제지 : A3 규격의 82%(10point)로 축소된 문제지로 확대독서기 사용자에게 한하여 신청
- ※ 확대답안지 : A3 규격의 표기형과 기입형 중 택 1

참고 2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 시 유의사항

1. 발급기관 :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 ※ 다만, 임신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 가능
 - ※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 [병원·약국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 되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2. 발급일자 :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원본)
3.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① 장애유형 및 등급(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아래 예시표 녹색 표시 내용)
 -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아래 예시표 적색 표시 내용)
 -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아래 예시표 청색 표시 내용)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지원 신청가능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예시) 점자문제지,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를 신청할 경우
 -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소견서)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에 의함
- 임신부 수험생의 경우에도 임신주수, 편의지원 내용과 그 필요성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 내용 예시 >

장애유형 및 정도		예 시
시 각 장 애	장애정도가 심한 자 (舊.3급2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舊.4급2호)	상기인은 시각장애 3급2호이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시험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되는 자로서,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舊.6급)중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	상기인은 시각장애 6급이며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각장애로 인해 시험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기 타	상기인은 편안 약시와 무수정체 장애에 해당되는 자로서 눈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뇌병변 장 애	경 증	상기인은 뇌병변장애 4급이며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이 손상된 자로서 손, 목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서식5>

장애인 등 편의 지원 신청서

- 직렬 및 임용기관 :
- 성 명 :
- 생년월일 : (성별 :)
- 연락처 :
- 장애유형 및 등급:

신청인은 (장애정도가[심한자, 심하지 않은 자 / 임신부]로서 2019년 전라북도 지방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시 다음과 같은 편의 지원을 제공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편의지원 신청내용 :
 - 확대(축소)문제지(%)
 - 점자문제지
 - 음성지원컴퓨터
 - 확대답안지
 - 시험시간 연장(배)
 - 대 필
 - 별도시험실 배정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서면자료 제공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 ※ 해당되는 항목에 표기 또는 내용 기재

- 첨부 : 1.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공통)
2. 의사 소견서 원본 1부(해당자)
3. 의사 진단서 원본 1부(해당자)

2019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전라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4.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4.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①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직급·직류·임용기관별)의 공개경쟁
임용시험 (※ 경력경쟁임용시험은 해당하지 않음)

② 임용목표 : 30%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 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목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에서 -3점(조정점수 적용으로 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목표인원-합격선 이상의 해당 성(性)합격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합니다.
- 임용목표 인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가 추가 합격하는 것으로 합격선 안에 있는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 관련규정: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5. 가산점 관련 안내

5. 가산점 관련 안내

□ 가산점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② 의사상자 등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③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 1, 직렬별 가산점 1)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항목 참고
	직렬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① 취업지원 대상자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시험단위(직급·직류·임용기관)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직급·직류·임용기관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 (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의사상자 등

- 필기시험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합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 제1항 제2·3호에 의한 대상자는 각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시험단위(직급·직류·임용기관)별 선발 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직급·직류·임용기관별로 선발예정인원이 9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의사상자 등록여부와 가점 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 044-202-3258) 또는 해당 시·군 사회복지 담당부서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가. 공통적용 가산점 (제5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수의 직류 제외)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1%	0.5%
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舊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나. 직류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1)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 중 보건의직류

- 다음 직류의 응시자가 직류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렬(직류)	직급	대상자격증	가산비율
행정(일반행정)	9급	변호사, 변리사	5%
사회복지(사회복지)	9급	변호사	
보건(보건)	9급	임상심리사 1·2급	

2) 기술직군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분	9 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 24p. 직류별 적용 가산점 자격증 일람표

3) 직류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적용제외 직류

- 자격·면허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류
 - 제5회 경력경쟁임용시험 : 수의

□ 가산점 관련 유의사항

- 2019년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필기시험일을 포함한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OC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 없음)

시험명	가산점 등록기간	비고
제6회 공개경쟁임용시험	2019. 12. 21.(토) ~ 12. 25.(수)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3%, 5%, 10%)과 보훈번호 및 의사상자 증서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가산점 합산 관련

- ① 취업지원대상자 (10% 또는 5%) 및 의사상자 가산점 (5% 또는 3%)
- ② 자격증 (공통적용) 가산점 (1% 또는 0.5%)
- ③ 자격증 (직류별 적용) 가산점 (5% 또는 3%)

응시자가 보유한 ①, ②, ③의 가산점을 각각 하나씩 합산하여(①+②+③) 적용합니다.

①, ②, ③의 분류 내에서 가산점이 중복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가산점 하나만 적용됩니다.

- 해당 기간 내 가산자격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정상등록하지 않았거나 자격증 종류, 자격번호, 보훈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1 직류별 적용 가산점 자격증 일람표

○ 제6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정	일반행정	-	번호사 번호리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	번호사
농업	일반농업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보건	보건	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 식품가공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임상심리사1급(5%), 임상심리사2급(5%)	
환경	일반환경	기술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대기·수질)
		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아름다운 山河 응비하는 생명의 삶터, 천년전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시설	일반토목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축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건축사

비 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6. 수험생 유의사항

6. 수험생 유의사항

① 필기시험 문제출제

- 행정학개론에 지방행정이 포함됩니다.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수학은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 미적분 I 에서 출제됩니다.
- 2020년부터 사회, 과학, 수학 및 고졸(예정)자 경력경쟁시험 과목의 출제범위는 2015년 개정된 교육 과정이 적용됩니다.
- 필기시험 문제는 전라북도에서 자체 출제합니다.
- 전라북도 자체 출제 과목문제는 비공개하며, 시험 종료 후 해당 문제책은 모두 회수합니다.

② 필기시험 관련 (답안지 수정테이프 사용 허용)

- 답안지마킹 필기도구는 컴퓨터용 사인펜만 허용되므로 필기시험일에 반드시 지참합니다.
- 답안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흰색 수정테이프를 사용하거나 새 답안지로 교체합니다.
(※ 수정액, 수정스티커는 사용불가)
- 수정테이프가 떨어지는 등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험생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며 응시자 답안의 정오여부는 채점기 인식결과에 따릅니다.

③ 수험생 유의사항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전라북도 홈페이지(www.jeonbuk.go.kr)의 시험·채용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시험에 있어 부정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아름다운 山河 응비하는 생명의 삶터, 천년전북!

- 공개경쟁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임용기관에 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며,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019년도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임용된 자는 임용된 날부터 3년(단, 남원시·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순창군·고창군은 5년) 이내에 (경력경쟁임용시험은 4년 이내) 최초 임용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 제한 및 최초 임용된 기관외의 기관으로 전보가 제한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총무과 공무원채용팀(☎063-280-2266, 2213, 421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서접수 관련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1522-066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